직인생략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25-7519호

시행일자 2017. 11. 1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처방 관련 협조 요청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13588호(2017. 10. 25.)

3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및 졸피뎀 정제의 다량·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와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 및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, '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해온 바, 동 자료를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허가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한 체중감량요법(식이 및 운동요법)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(BMI)가 30kg/m² 이상, 또는 다른 위험인자(예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)가 있는 BMI 27kg/m²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,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 바람

나.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처방 시 환자의 불면증 진단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(보통 수 일에서 2주, 최대 4주,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)을 가급적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또한,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는 약물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-8시간 이내에는 운전,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안내, 주지시킬 것을 당부해주기 바람

4. 아울러,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·투약 시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하도록 독려해줄 것과 향후 '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'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